

'23년 제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알림

□ 필기 시험일 / 장소 : 2023. 6. 17.(토) / 부산해사고

□ 응시자 입실시간 : 09:10까지 입실

※ 입실시간 필히 준수, 입실시간 경과 후 입실 불가

□ 시험 진행 시간표

응시분야	시험 시간	세 부 내 용
(일반직공무원) 방재항해, 방제화공, 방제환경, 전송기술	10:00 ~ 11:00	○ 객관식 : 3과목(과목당 20문항)
(경찰공무원) 해경학과	10:00 ~ 11:20	○ 객관식 : 4과목(과목당 20문항)

□ 필기시험 이후 참고사항

○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* 기간 : '23. 6. 17.(토) 12:00 ~ 18.(일) 12:00

* 이의제기 사유 및 법령, 규정 등 명확한 근거제시 필요(근거 부족 시 답변 불가)

* 원서접수 사이트(gosi.kcg.go.kr)에서 확인

* 이의제기 기간 이후는 답안 등 변경 불가

○ 응시자 사전접수 공개 : 2023. 6. 21.(수) 10:00 ~ 22.(목) 18:00

* 원서접수 사이트(gosi.kcg.go.kr)에서 확인

○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23. 6. 23.(금) 17:00경

* 원서접수 사이트(gosi.kcg.go.kr)에서 확인

* 합격자 발표 관련 문의전화는 자제 바랍니다.

'23년 제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고지하는 유의사항을 경청하고 따라야 하며,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나.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'컴퓨터용 흑색 사인펜'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OMR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.

* 시험 중 시험감독관 외 他 응시자의 수정테이프는 사용 불가(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)

라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(비치된 시계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)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,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마.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, 시험 시간 종료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.(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)

바.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물품은 시험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소지가 발견되거나 자진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- (소지 가능물품)

- ▶ 신분증, 응시표, 개인 필기도구(필통 자체는 불가), 수정테이프, 통신 및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, 마스크 등
- ▶ 돋보기·귀마개(이어플러그*)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시험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물품

- * 귀마개는 귓구멍을 막기위한 적절한 크기의 스펀지 형태만 허용
- **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유의사항 고지 및 종료시간 알림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— (소지 금지물품 예시)

- ▶ 모든 통신기기 : 스마트폰,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블루투스 이어폰 등
- ▶ 모든 전자기기 : 디지털카메라(펜), 전자사전,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, 유선 이어폰,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조명기기 등
- ▶ 모자, 방석, 무릎담요, 커블체어, 교과서, 노트, 연습장, 참고서 등
- * 휴대폰 등 소지금지 물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(전자·통신기기는 전원을 OFF)
 - ① (수납가능한 물품) 본인의 가방에 넣고, ② 제출 위치에 가지런히 적치를 해야 합니다.
- * 전원이 OFF되지 않은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가 작동할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사.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은 가능(붙임 1.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참고) 하나, 화장실 사용에 따른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.

아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의 기재 시간 또는 목적 등의 이유와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. 시험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음(다리를 떠는 소리, 필기구의 딱딱이는 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) 등으로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 감독관이 제지를 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차. 모든 시험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은 불가합니다. 또한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: 안내문은 각 시험실 전면 부착

- '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선발 시험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**유의사항** 안내

사용 원칙

사용 시간 시험시작 20분 이후 종료 15분 전

사용 횟수 화장실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, 화장실 사용시간은 모두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시간 배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사용 절차

1.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요청(동(同)시험실 내 사용은 1명씩)
-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(2명 동시 사용불가)
2.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(소음주의)
3. 응시자 서약서 작성 및 소지품 검사

소지품 검사방법

1단계 양팔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줌

2단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검사 실시
※ 탐지결과 특이점 발견시 동성 감독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

4. 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사용(지정한 곳 이외 사용 불가)
5.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 재 실시
6.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(개인 이동 불가)

유의 사항

- ▶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 외에는 화장실 사용 불가
- ▶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(이동 및 대기시간, 소지품 검사 등)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주의, **화장실 사용은 입실부터 5분으로 제한**
- ▶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 입실 불가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
- ▶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처리

※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
- 이용가능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 경과 후 재 입실 가능
예) 사용종료 1분전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 후 재 입실 가능